

2026년 파주시 전기자동차(일반 승합) 보급사업 변경 공고

수송부문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친환경 모빌리티 확산을 위하여 「2026년 파주시 전기자동차(일반 승합) 보급사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6. 7. 1.

파 주 시 장

※ 변경사항: 일반 승합 신청대상

[변경 전] 개인만 가능 → [변경 후] 소형 전기승합 구매 건(1대)에 한하여 법인·개인사업자 지원 가능

<기존 개인 신청자 중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 후 재신청>

⇒ 2026. 6. 23. 지침 변경 후 접수 건부터 적용

1 사업 개요

○ 보급대수: 총 9대

※ 실제 보급대수는 차량별 보조금 차등 지원 등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접수기간: 2026. 1. 27.(화) 10:00 ~ 11. 30.(월) 18:00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예산 범위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자격 부여 가능

※ 신청 시 공고 구분을 '본공고'로 접수

○ 선정기준

- (자격부여) 신청서 접수순
- (대상자 선정) 출고·등록순(지원가능 확인요청순)

○ 지원대상: 전기승합차를 신규 구매하여 신규 등록하는 차량 소유자

※ 단, 법인·개인사업자는 소형 승합차 구매 건에 한해 신청 가능

○ 지원차종: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게재된 차량

붙임 참조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로 선정된 제작·수입사가 판매하는 차량
- 전기자동차 주요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 처리현황 등 필수 정보를 제공한 제조사가 생산한 차량
- ※ 공고일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 공고 없이 파주시의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됨

2 신청대상 및 자격

- 신청대상: 신청서 접수일 이전 연속하여 파주시에 60일 이상 거주하거나 파주시에 60일 이상 사무소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구 분 (신청유형)	대상 자격
개 인	· 파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 연령)인 자
개인사업자	· 대표자의 주소(사업장 주소와는 무관)가 파주시인 만 18세 이상인 사업자 ※ 자동차등록증의 사용본거지를 파주시로 등록한 경우에만 가능 ※ 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 사단·재단 등의 단체는 개인사업자로 간주
법 인	· 파주시에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단체
공공기관	· 파주시에 소재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외 국 인	· 파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재외국민(F-4비자), 국내영주권자(F-5비자)로 차량 출고일자 기준으로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이 남아있는 자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 구매하는 경우
(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 자동차 등록말소 이력이 있는 차량
※ 단, 전사용 차량인 경우라도 신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하는 경우는 가능
-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재지원제한기간 내 최초 구매 차량 1대 외)
- * 승용·승합·화물: 2년('26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전 구매지원 건에 대해서도 적용)
- ** (예시1) 전기승용 1대 구매 후 1년 뒤 전기승용을 추가로 구매 시 최초 차량에만 보조금 지원
(예시2) 전기승용을 동시에 3대 구매하려는 경우 이 중 1대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
-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환수금이 있을 경우 납부 완료 限)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파주시가 아닌 경우

○ 신청자격(필수조건)

-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 체결
※ 차량구매계약서에 계약번호 및 출고 예정일자 기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에 확인 및 서명
- 자동차를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반드시 **‘파주시’**로 등록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파주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구매신청자는 **지방세에 대한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
-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
※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매·등록 시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원(가족)*에 한해서만 지원 가능**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으로 한정 [동거인 불가]

3 보조금 지원금액 및 기준

○ 차종별 보조금 지원금 **붙임 참조**

(단위: 만원/대)

차 량 별		최대 보조금액(대당)			
		계	국 비	시 비	도 비
전기승합 (일반)	소 형	최대 1,950	최대 1,500	최대 450	-
	중 형	최대 6,500	최대 5,000	최대 1,500	-
	대 형	최대 9,100	최대 7,000	최대 2,100	-

대형 전기승합 구매자 자부담 기준

- 해당 차량 구매를 위해 **최소 1억원 이상 부담**(이하 ‘최소 자부담금’)해야 하며, 최소 자부담금과 전체 보조금(구매보조금, 저장보조금 등, 이하 ‘전체 보조금’)의 합이 해당 차량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최소 자부담금과 전체 보조금의 합이 구매 시 차량가격을 초과하거나 전체 보조금의 합이 해당 차량가격의 7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을 구매보조금에서 차감
 - 구매자가 제작·수입사로부터 대출이자 또는 대출원금, 충전기(캐노피 등 충전기 연계시설 포함) 설치 또는 충전요금, 부대시설 리모델링 등 별도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또는 물품의 가액)만큼은 자부담금 산정 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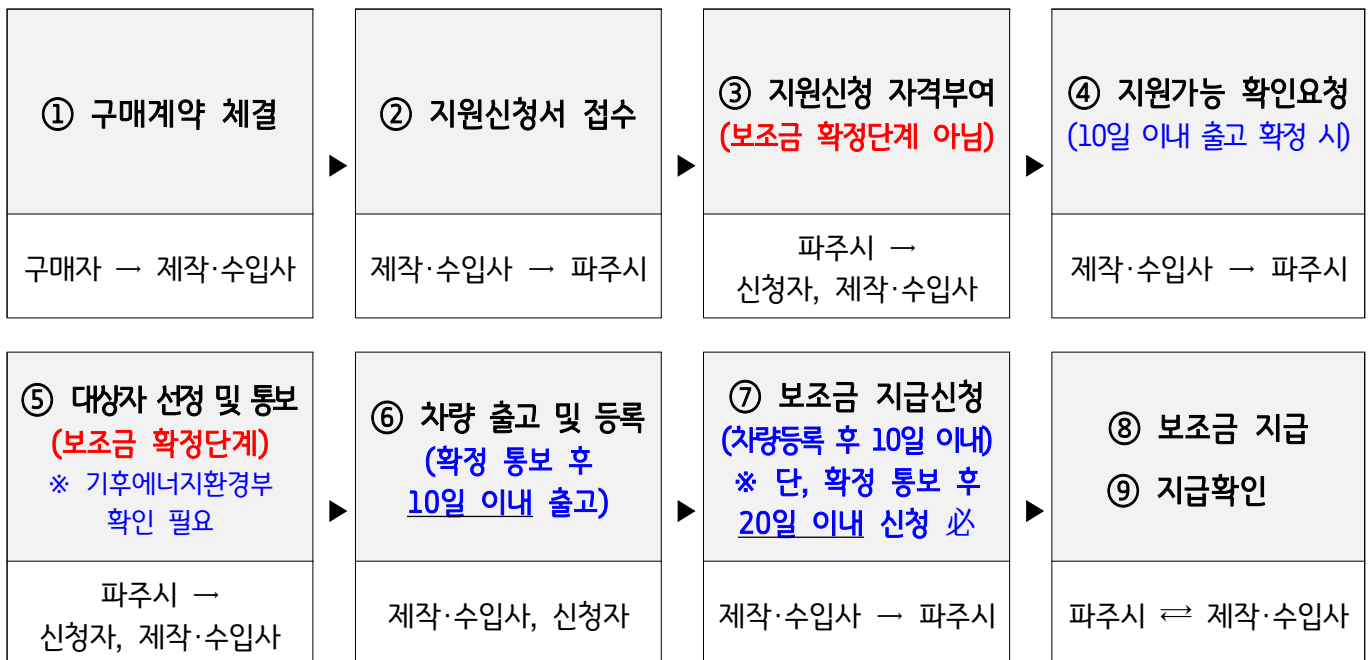
○ 지원가능 대수 ※ 재지원제한기간: 2년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1대 / 공공기관 제한 없음

- ▶ 중·대형 승합차를 구매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공공기관 조달구매 제외)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추진하는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지원
- ▶ 일반 승합차의 경우, 이용자명의 리스 등 리스 차량으로 신청 불가
 - ※ 기존 리스 차량으로 신청하지 않아 보조금 지급이 완료된 경우라도, 차량 등록원부 조회 결과 이용자명의 리스 차량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조금은 전액(국+시비) 환수함

4 신청절차 및 대상자 선정

○ 민간부문



① 구매계약 체결

- 전기자동차 구입을 희망하는 자는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지원신청서(증빙서류 포함)를 작성하여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제출

② 지원신청서 접수

- 제작·수입사는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할 경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제출

③ 지원신청 자격부여

- 신청서 접수순으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결격사유(거주기간, 이중신청 등) 확인
-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보조금 지원신청 자격’ 부여
[신청자 및 제작·수입사로 문자 안내] ※ 예산을 초과하여 부여 가능
- 해당 단계는 단순 신청 자격에 적합하다는 의미이므로, **자격부여 상태에서 차량 출고 시 보조금 지급 불가**

④ 지원가능 확인요청

- 제작·수입사는 차량 출고가 확정되는 시점(출고 전 10일 이내)에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지원가능 여부를 파주시에 확인 요청
※ 출고일자가 확정된 차량만 지원가능 확인 요청 가능(배정화면 등 전산 캡처사진 첨부)
- 여러 대의 차량이 동시에 요청할 경우, **지원가능 확인 요청순**으로 검토

⑤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여부를 파주시에 통보하면, 승인 건에 한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승인 시기 등 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 대상자 선정일, 차량 출고 및 등록 기한(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후 10일 이내), 보조금 신청 기한(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후 20일 이내) 안내
[신청자 및 제작·수입사로 문자 안내]

- ▶ 기후부는 예산 목적 및 상황, 보급 여건, 법적 지원근거,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파주시에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여부를 통보함
- ▶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는 신청 순서와 관계없이 통보 가능하며, 지원대상자 선정여부를 통보받지 못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음

⑥ 차량 출고 및 등록

- 반드시 대상자 선정 문자 받은 후 진행
- **대상자로 선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 취소**

⑦ 보조금 지급 신청

- 제작수입사는 차량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단, 지급신청 마감일은 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후 20일 이내)**에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으로 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보조금 입금계좌 입력 시 제작·수입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입력
→ 대리점·지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시 본사 기준 과세자료로 정상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⑧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신청순으로 신청서 검토** 후 제작·수입사로 보조금 지급
- (구매자) 차량구매 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차량 제작·수입사에 납부
- (제작·수입사) 파주시로부터 보조금(국비+시비) 수령
- ※ **보조금 지급 처리 전 타 지자체로 전출하거나 지방세 체납내역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 신청 상황, 예산 편성 상황 등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⑨ 지급확인

- 제작·수입사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의 ‘지급신청 정보’에서 보조금 지급일자 확인 및 신청 계좌로 보조금 입금 여부 확인 후 ‘지급확인’ 버튼 클릭

○ 공공부문



- 구매기관(공공기관)은 자체 예산으로 전기자동차 구매대금을 납부한 후 파주시에 보조금 지급 요청 가능 ※ 단,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파주시에 사전 확인

※ 상기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 및 지급 절차 미준수 시 보조금 미지급(既지급시 환수조치 가능)

- ▶ 모든 발급 서류는 **지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하며, 열람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발급용**으로 제출
- ▶ 모든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1개의 파일로 통합하여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첨부** (별도의 원본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지원신청 서류

구 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구입차종'란에는 누리집 시스템의 신청차종과 일치하도록 작성 예) 스타리아 투어러 일렉트릭 11인승 — 스타리아 (X), 스타리아 투어러 일렉트릭 11인승(O) ▶ 공동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와 공동명의자 성명 및 생년월일, 신청자 서명란에 함께 기재 ▶ 공란없이 모두 기재, 날짜는 매매계약일보다 앞설 수 없음 ·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계약번호 및 출고예정일 필수 기재) ※ 계약서 내 계약번호와 차종은 시스템에 입력한 계약번호와 차종과 일치해야 함 ·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정부24 또는 위택스에서 발급 가능)
추가서류	개 인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보여야 함)
	개인사업자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보여야 함)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비영리단체일 경우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
	법 인 공공기관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외 국 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사실확인서 ※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음이 확인 가능한 서류
기타서류	공동명의	· 주민등록등본 ※ 세대주와의 관계, 공동명의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이 모두 보여야 함

○ 지급신청 서류

구 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서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지급신청서 작성 후 지급인쇄 '인쇄' 버튼을 클릭, 출력한 지급 신청서로 제출 ▶ 신청자에 제작·수입사 인감 날인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갑) 사본 · 세금계산서 사본 ※ 출고 증빙(차량 출고일 = 세금계산서 발행일) · 사업자등록증(제작·수입사) · 통장사본(제작·수입사) · 전기자동차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해당 시	· [중·대형] 하자보증보험증권 · [대 형] 자부담확인서

6 유의사항 및 의무준수 사항

○ 유의사항

-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반드시 출고 확정시점 10일 이내에 구매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파주시에 확인받아야 함
 - ※ 자격부여 상태에서 차량 출고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며, 관련 사항에 대하여 파주시에서 책임지지 않음
 - ※ 자격부여, 대상자 선정, 보조금 지급 등 일련의 과정에서 착오 신고, 서류 미비, 체납 사유 발생 등 문제 발생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거나 지연될 수 있음
- 지원대상자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차량 출고,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단, 지급신청 마감일은 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후 2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될 수 있음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국비+지방비+이자) 환수 및 해당 구매지원 신청인 등에 대해서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보조금 지원대상자는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임의로 변경할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함
- 보조금 선점을 목적으로 2개월 이내 출고가 불가능함에도 신청서류 제출 및 구비서류 허위 기재 등으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에서 취소되고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보조금 지원대상자가 계약을 취소할 시 파주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 통보할 경우 추후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기관(시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기 바람
- 전기자동차 등록 시 자동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함
 - 대표신청자와 자동차 등록 시 대표소유자가 동일해야 보조금 지급 가능
 - 보조금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받아 자동차를 구매한 자의 동일 세대원 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 공동명의는 대표소유자 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대표 소유자 1인에게 재지원제한기간(2년) 적용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 자동차 보유자의 자산검증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파주시가 보조금 지급내역(지자체명, 지급금액, 지급일)을 자동차등록원부에 특기사항란 기재함

○ 의무준수 사항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수출 8년, 그 밖의 사유 2년)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 사유에 따라 보조금 회수요율을 별도 적용함
- 의무운행기간 내 전기자동차를 매도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매수자가 잔여 의무운행기간 준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함(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
 - ※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의무운행기간 관련 승계사항을 고지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등록 말소(폐차·수출 등) 시에는 파주시의 사전 승인([별지 제4호 서식]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받아야 하며, 아래<표>의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국비+지방비)을 반납하여야 함

- ※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말소하려는 자(이하 “예외적 말소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액(차량 보상금에 한함)이 예외적 말소자가 해당 차량 구매시 지불한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회수하며, 차액 회수액은 법정 기준에 따른 보조금 회수액을 초과하여 회수할 수 없음
- ※ 예외적 말소자의 증빙자료 제출 미흡 등으로 상기 차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 기준에 따른 보조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음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①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② 그 밖의 사유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 2022. 6. 30. 이후 경비지원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로서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일 (2024. 5. 13.) 당시 말소되지 않은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도 적용(수출 8년, 그 외 2년)

7 기타사항

-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및 파주시의 결정에 따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에너지과 에너지산업팀(☎ 031-940-8465) 및 민원 콜센터(☎ 031-940-4114),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로 문의

기관	주요 역할	연락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정책 관련 문의	044-201-6888
전기자동차 통합콜센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 전기자동차 보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 - 전기자동차 구매절차 진행	1661-0970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친환경자동차 보급 관련 일반적인 사항 - 전기자동차 충전소 찾기 - 전기자동차 지원 금액 및 대상 차량 확인 등	ev.or.kr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전기자동차(승용·화물) 2대 이상 구매 시	032-590-3684
파주시 에너지과	파주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 보조금 지원 자격, 지방보조금 등 책정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대상자 선정	031-940-4114 (통합콜센터) 031-940-8465

- 붙임 1. 2026년 전기자동차 차종별 보조금 지원금액
 2. [별지 제1호 서식] 2026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3. [별지 제2호 서식] 2026년 전기자동차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4. [별지 제3호 서식] 전기자동차 말소 승인요청서

**보조금 지원 신청 전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및 제작·수입사에 있습니다.**

[붙임]

2026년 전기자동차 차종별 보조금 지원금액

○ 일반 승합

(기준: 만원)

구분	제작·수입사	차종	구매보조금		
			국비	시비	계
소형	MTR	엠티알ST1승합자동차(CV1)	1,471	441	1,912
	현대자동차	스타리아 라운지 일렉트릭 11인승	1,500	450	1,950
	현대자동차	스타리아 투어러 일렉트릭 11인승	1,500	450	1,950
중형	현대자동차	카운티일렉트릭	5,000	1,500	6,500
	현대자동차	카운티일렉트릭(마을버스)	5,000	1,500	6,500
	우진산전	아폴로700	5,000	1,500	6,500
	케이지모빌리티커머셜	KG C070 E-STANA	5,000	1,500	6,500
	한차	GREENWAY720	3,870	1,161	5,031
	중원자동차	EV J2	7,787	3,037	10,824
	에빅오토모티브코리아	세레온(마을)	4,853	1,456	6,309
	피라인모터스	HYPERS1607P	4,045	1,214	5,259
대형	현대자동차	일렉시티 이층버스	11,069	3,321	14,390
	현대자동차	일렉시티(4PACKV2)	6,683	2,005	8,688
	현대자동차	일렉시티(4PACKV1)	6,994	2,098	9,092
	현대자동차	일렉시티타운	6,403	1,921	8,324
	케이지모빌리티커머셜	KGC110	6,445	1,934	8,379
	케이지모빌리티커머셜	KGC090(27인승)	5,669	1,701	7,370
	케이지모빌리티커머셜	KGC090(42인승)	6,015	1,805	7,820
	우진산전	아폴로1200-S42	7,000	2,100	9,100
	우진산전	아폴로1100V2.5	6,681	2,004	8,685
	우진산전	아폴로900V2.0	5,921	1,776	7,697
	우진산전	아폴로1100 V2.5 양문형	6,680	2,004	8,684
	우진산전	아폴로900 V2.0(25인승)	6,235	1,871	8,106
	범한자동차	E-STAR 8K	5,015	1,505	6,520
	범한자동차	E-STAR 11K	5,834	1,750	7,584
	티에스모터스	여울900	5,921	1,776	7,697
	티에스모터스	여울1100	6,101	1,830	7,931
	이엠코리아	에픽시티(NCM)	5,931	1,779	7,710
	이엠코리아	에픽타운(NCM)	5,296	1,589	6,885

[별지 제1호 서식] _ 서명란에 모두 서명 **※(공동명의로자 포함)**, 추가보조금 및 전환지원금 칸에 모두 체크

2026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명(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구입차종		구매대수		보조금 신청액	총 계 원
					구매지원금 원
					전환지원금 원
추가보조금	☐ 해당 없음 ☐ 다자녀 가구 (☐ 2자녀 / ☐ 3자녀 / ☐ 4자녀 이상) ☐ 생애 첫차 구매 ☐ 택시 ☐ 소상공인(화물) ☐ 택배 ☐ 기타() [화물차 신청자] ☐ 경유화물차 보유 ☐ 경유화물차 미보유				
전환지원금	☐ 신청 (택1: ☐ 차량 판매 ☐ 폐차) ☐ 미신청(미해당) ※ 추후(별도) 신청 불가				
등록주소지					
연 락 처	(전화)	(휴대폰)	(이메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자동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파주시장 귀하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 첨부서류 : 전기차 구매계약서 1부(출고예정일 포함),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추가보조금 증빙서류, 기타 공고문에 기재된 필요 서류 일체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 · 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 ·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 전기자동차 제작·판매사(현대, 기아, 테슬라, BMW, KG모빌리티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하며 관련 개인정보 보안을 유지해야 함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구매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쯤)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파주시장 귀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을 기준으로 계산)을 준수해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파주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8년 이내 수출 목적의 말소 등록시,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의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반납해야 함
- **자동차 최초 등록 주소지가 '파주시'여야 하며**,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차량 지분율과 관계없이 차량 등록증상 대표소유자 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함
-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관계기관(시청, 행정복지센터 등)에 확인해야 함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자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차량 출고,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단, 지급신청 마감일은 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후 2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될 수 있음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이후 타 차종(차명 포함)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음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파주시)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파주시가 해당 전기차 제작·수입사로 지급함**
-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기후부)』과 파주시의 결정에 따름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 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파주시장 귀하

2026년 전기자동차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파주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파주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파주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6. . .

지원대상자(구매자) : (서명 또는 인)
전기차 제작·판매사(신청인) : (사업자 직인)

파주시장 귀하

